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문금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60 발의연월일: 2025. 4. 11.

발 의 자:문금주・송옥주・박지원

조계원 • 주철현 • 박해철

이병진 • 이용우 • 김문수

박수현 • 이재강 • 송재봉

전진숙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농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자연 조건과 기온·강수량·일조량 등기후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크고 이로 인한 가격 불안정으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이 어려운 가운데, 최근 가뭄·폭우·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작물 작황도 좋지 않아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.

여기에 정부는 농산물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등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왜곡하면서,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소극적인 시장 대응으로 생산원가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어 개별 농업인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, 노동력 부족, 농산물의 수입 및 기후위기 등으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

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(안 제16조의2 신설).
- 나.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, 기준가격, 품목 선정 주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(안 제16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.

제2장에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농산물가격안정제도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,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제3항에 따라 확정·고시된 기준가격[평년 가격(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)을 기준으로 하되 생산비용 및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. 이하 같다]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(이하 "농산물가격안정제도"라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품목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

채소, 과일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·고시된 농산물가격안 정제도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(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지급비율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- 제16조의3(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)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
 - 2.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
 - 3. 차액의 지급비율
 - 4. 적정 재배면적,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
 - 5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선정 및 확정 주기
 - 6.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 -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.
- 1.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
- 2. 품목별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- 3.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
-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16조의2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6조의2(농산물가격안정제도)
	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
	물의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
	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
	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,
	<u>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</u>
	<u>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제3항에</u>
	<u>따라 확정·고시된 기준가격</u>
	[평년 가격(직전 5년 중 최저
	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
	균가격을 말한다)을 기준으로
	하되 생산비용 및 수급 상황
	등을 고려하고 예산의 범위에
	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	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
	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
	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
	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
	을 말한다. 이하 같다] 미만으
	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
	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
	지급하는 제도(이하 "농산물가
	격안정제도"라 한다)를 실시하

여야 한다. 다만, 농산물가격안 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품 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 산된 품목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소, 과일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약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 항에 따라 확정·고시된 농산 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 시한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 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(기준가 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 다. 이하 같다) 지급비율을 제1 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

<신 설>

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제16조의3(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)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립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 정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

- 1.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 한 대상 품목
- 2.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및 시 장가격
- 3. 차액의 지급비율

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4. 적정 재배면적,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
- 5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선정 및 확정 주기
- 6.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 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부의하는 사항
-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 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, 위원

제57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제57조(기금의 용도) ① ------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 할 수 있다.

1. • 2. (생략) <신 설>

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 촉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.

- 1.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
- 2. 품목별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- 3.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 에 맞는 사람
-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 2의2. 제16조의2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시행

 3. ~ 6. (생 략)
 3. ~ 6. (현행과 같음)

 ② ~ ⑤ (생 략)
 ② ~ ⑤ (현행과 같음)